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 2 월 9 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3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중 “조합”을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을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비영리외국법인”을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비생명보험업”을 “사회보장보험업”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하고, 동항제3호 전단중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과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으로,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청장”을 “국제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2제1항”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제11조제6호중 “감소액”을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중 “법 제17조 각호”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로,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를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7조제3호”를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7조제4호”를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장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

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⑤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7조제2항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 전단중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을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으로, “출자받은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출자받은 금액(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으로 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로,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를 “자산총액과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로 한다.

- 2.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④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법 제45조”를 “법 제45조 및 제48조의2”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호중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을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중 “제8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을 “시가”로, “각호”를 “각 목”으로 하며,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29조제2항 전단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을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시가”를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동조제1항”을 “동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을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동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50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5만원”을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중전의 제7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제44조의 제목 “(퇴직금의 손금불산입)”을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퇴직금은”을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3호 및 제4호중 “퇴직금을”을 각각 “퇴직급여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하며, 동항제1호중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를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퇴직금을”을 “퇴직급여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중 “퇴직금을”을 “퇴직급여를”로,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을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으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도로 하며”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용인의”를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법 제2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중 “본다.”를 “보며,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이를 금융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제1호중 “인건비”를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로 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57조제2항중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로 하고, 동조제3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10분의 1”을 “100분의 5”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7호중 “신용불량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38.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제62조제1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수출로”를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로 한다.

제64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5. 「농어촌정비법」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본문중 “현물출자·합병”을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 전환, 합병”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합병”을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으로 하며, 동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제73조제5호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를 “제3호의”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제73조제3호”를 “제73조제3호 및 제5호”로,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통화스왑계약”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각각 “통화스왑계약”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3

호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료”를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료”로 한다.

-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제80조제1항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유형고정자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동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중 “토지등”을 “유형고정자산”으로 하고, 동항 산식중 “토지등”을 각각 “유형고정자산”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토지등별료 건축물”을 “유형고정자산별료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토지등”을 각각 “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을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경우 그 합병법인이”로, “제4항제3호”를 각각 “제5항제1호”로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전의 현황에 의하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의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⑤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

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합병계약 당시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보다 낮을 것

나. 피합병법인보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

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보다 적을 것

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 합계액에 미달할 것

마.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차액이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100분의 50

을 초과할 것

제82조제1항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유형고정자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동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중 “토지등”을 “유형고정자산”으로 하고, 동항 산식중 “토지등”을 각각 “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분할신설법인등”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의 산식중 “분할신설법인등”을 각각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 후단중 “분할신설법인등”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

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④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분할합병전의 현황에 의하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

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의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을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되,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가목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⑨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

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나목중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을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제6항 전단중 “제39조·제39조의2”를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로,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을 “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익중 “3억원이상”은”을 “이익 중 “3억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은”으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3호중 “제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92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55조의3제3항”을 “법 제55조의2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egin{array}{l} \text{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 \\ \text{세액(법 제57조의2제1항의} \\ \text{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 \\ \text{납부세액을 말한다)}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중 과세대상소득금액} \\ \hline \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중 국외원천} \\ \text{과세대상소득금액} \end{array}$$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 회사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중 “법 제28조제1항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호바목을 삭제하고, 동호차목중 “본점”을 “본점등”으로 한다.

제1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

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이 조 및 제114조의2”를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 단서중 “제22조의2 각 호”를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중 “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법 제76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제131조제2항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④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3조제6호”를 “법 제93조제6호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7항 내지 제14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3항(중전의 제12항) 및 제14항(중전의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⑬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137조제4항중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를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한다.

제1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를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로,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를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당해 외국법인의”를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로 한다.

제138조의4제6항중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를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이 조에서 “채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 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1.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채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채약상대국의

-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계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 5. 소득수취법인이 계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 7.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인 경우

- 가. 투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계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
- 나. 직전과세연도(신규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 현재 과세연도)기간 중에 투자회사등의 투자자가 일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
-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보정할 사항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3. 보정할 기간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법인이 제138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58조제1항제3호 본문중 “사업자”를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작물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

고, 동호 단서중 “협회등록전에”를 “코스닥상장전에”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제3호중 “법 제93조제3호·제7호 및 제8호”를 “법 제93조제3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64조제5항중 “기한”을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중

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사 업 연 도	비 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대통령령 제1921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되는 그 이자등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자등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으로 볼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9항 및 제17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75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 × 100분의 5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9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본다.

제14조(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배당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중전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자본을 증가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1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외국법인의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5조제4항·제1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②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은 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또는 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인이 퇴직연금 분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며, 그 밖에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 등의 손비 인정(영 제19조제15호)

- (1)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 인정범위에 추가함.
- (3) 맞춤형 교육 및 현장실습수업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원활

한 인력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대한 손비 인정(영 제44조의2)

- (1)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2)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3)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급여 총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영 제60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되므로 퇴직급여 총당금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2) 퇴직급여총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하는 한편, 퇴직급여총당금 누적액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되, 이 영 시행 후 게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동안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도록 함.

- (3) 퇴직금제도 위주인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장부가액 대비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는 주식 등의 범위 확대(영 제78조제2항제1호 신설)

- (1)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감액평가된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그 감액평가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2)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으로 확대함.
- (3)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축소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합병평가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영 제80조 및 제82조)

(1)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토지 또는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

(2)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특수목적회사 등의 범위 신설(영 제86조의2제9항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 성격이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회사의 범위를 사모(私募) 방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2인 이하의 개인주주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퍼센트 이상인 특수목적회사로 정함.

(3) 개인유사 회사의 설립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92조의2제4항제4호)

(1)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일정 면적한도 내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이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이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한도를 종전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배)

에 해당하는 면적과 당해 주택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함

아.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적용절차 마련(영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 신설)

(1)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실질귀속자임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입증하는 때에는 환급하도록 하되,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승인 및 경정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법인 중 실질귀속자의 범위를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법인, 계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승인 및 경정청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거주자증명서, 법인의 설립신고서, 이사회 의사정명, 국내원천소득 처분명세서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